

의안번호	2201208
의 퇴 인	송옥주의원
회 답 일	2024.10.17.
추 계 번호	24B14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중대재해원인조사 및 조사보고서의 작성이 의무화 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억 3,300만원, 2030년 4억 2,1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20억 8,200만원(연평균 4억 1,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4.33	4.04	4.09	4.15	4.21	20.82	4.16

- 주: 1. 추계금액은 정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보고서(이하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함 1. 개요 2. 사실정보 3. 원인분석 4. 사고조사결과 5. 재발방지 대책 및 조치사항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	의무규정
2	안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3개월 내에 공표하여야 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제1항	○	—
2	안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제2항	—	• 미대상 — 중대재해의 원인을 조사·분석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공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
- 국회예산정책처의 공무원임금평균상승률¹⁾과 기관부담요율²⁾ 전망치를 적용하여 추계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현행법은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원인조사 여부를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인적인 지병 등 중대재해의 발생원인이 명백할 경우 등에는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2024.7. 기준, 단위: %)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2.5	1.9	1.9	1.9	1.9	1.9	1.9	1.9

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 요율

(2024.7. 기준, 단위: %)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기관부담 요율	13.004	13.114	13.210	13.305	13.399	13.494	13.584	13.587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음³⁾

- 그 결과 개인지병에 의한 재해 등이 명백한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 확인 등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재해임이 확인되면 중대재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종결하고 있음
-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함⁴⁾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⁵⁾

□ 개정안의 조치가 시행될 경우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보고서 작성의 의무화되므로, 개정안으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는 증가한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인원에 인건비를 적용하여 추계

□ (필요인원)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필요인원은 중대재해 보고서의 작성 건수의 증가량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소요시간을 이용하여 산출

- 필요인원은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보고서 작성건수 증가량에 1개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시간을 곱하여 산출
- (작성건수의 증가량)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될 경우 작성건수와 현행대로 임의규정이 유지될 경우 작성건수와의 차이를 통해 추계
 -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될 경우 작성건수: 개정안의 조치에 따라 중대

3) 「근로감독관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26조 ② 지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중대산업재해의 경우에는 다음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해서만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1. 산업법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일부적용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중 적용조항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재해
2. 고혈압 등 개인지병, 방화 등에 의한 재해 중 재해원인이 사업주의 산업법 위반, 경영책임자등의 중처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재해
3. 해당 사업장의 폐지, 재해발생 후 84일 이상 요양 중 사망한 재해로서 목격자 등 참고인의 소재 불명 등으로 재해발생에 대하여 원인규명이 불가능하여 재해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지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재해

4)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재해 조사보고서의 작성이 의무화될 경우 작성되는 보고서의 건수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중대재해 발생건수의 평균치를 적용하여 추계

- 현행대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작성이 임의규정일 경우 작성건수: 현재의 규정을 유지할 경우 작성되는 보고서의 건수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중대재해 조사건수의 평균치를 적용하여 추계

※ 추계기간 동안(2026~2030년)에도 중대재해의 증감으로 인해 보고서 작성 물량이 변화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행태의 변화는 현재 시점에서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최근 5년간(2019~2023년)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

[표 2] 중대재해 발생건수 및 조사건수: 2019~2023년

(단위: 건수)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수	1,062	1,199	1,237	1,713	1,799	1,402
중대재해 조사건수	799	761	699	635	610	701
발생보고와 조사건수 차이	263	438	538	1,078	1,189	701

주: 위 자료는 고용노동부 내부참고용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작성 시점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 (소요시간) 1개의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시간(20시간)은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산출
- 따라서 개정안의 조치에 따라 중대재해에 대한 원인조사 및 조사보고서의 작성이 의무화되면, 매년 14,024시간(=701건×20시간)이 소요될 예정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 소요시간: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추가 보고서 작성건수(A, 개)	701	701	701	701	701
보고서 작성 시간(B, 시간)	20	20	20	20	20
추가 소요시간(C=A×B, 시간)	14,024	14,024	14,024	14,024	14,024

주: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추가 소요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1명의 인원이 근무할 수 있는 연간 근로시간(2,080시간⁶⁾)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시행으로 추가되는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7명⁷⁾의 인력이 필요함

6)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연간 52주 = 40 × 52 = 2,080시간

7) 인건비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올림으로 산출함

- (인건비) 신규채용 인력의 인건비는 고용노동부 소속 7급 공무원⁸⁾의 임금(4,955만원)⁹⁾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전망치와 기관부담요율을 적용하여 산출
 - 2026년 신규 채용 예정이므로 2026년 기준 1인당 자산취득비(5,020천원)를 적용
- 개정안에 따라 중대재해원인조사 및 조사보고서의 작성이 의무화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억 3,300만원, 2030년 4억 2,1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20억 8,200만원(연평균 4억 1,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추가근무인력(A, 명)	7	7	7	7	7	—	—
1인당 평균임금(B, 백만원)	50	51	52	52	53	258	52
기관부담 요율 적용 1인당 평균임금(C, 백만원)	57	58	58	59	60	292	58
인건비 총액(D=A×C, 백만원)	398	404	409	415	421	2,047	409
자산취득비 총액(E, 백만원)	35	—	—	—	—	35	7
합계(F=D+E, 백만원)	433	404	409	415	421	2,082	416

주: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소요시간이 변동될 수 있어 추가근무인력도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주요 가정의 변경에 따라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 결과는 재량규정인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8) 고용노동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1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 관련 부서에 신규임용된 공무원 75명의 인원 중 69명이 7급공무원임

9)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 편성된 본부 소속 7급 공무원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와 직급보조비를 제외한 봉급, 성과급,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의 합계액을 인원수로 나눈 금액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go.kr